

<b>해외직접투자 신고서(보고서)</b>				처리기간
신고인 (보고인)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		법인 등록번호	
	대 표 자	(인)	주민등록번호	
	소 재 지	전화번호 :		
	업 종			
해외직접투자내용	투자국명		소재지	
	투자방법		자금조달	
	투자업종		주요제품	
	투자금액		출자금액	
	투자비율		결산월	
	투자목적			
	현지법인명 (영문)	(자본금 : )		
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(보고)합니다. <span style="float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   월    일</span>				
외국환은행의 장 귀하				
위와 같이 신고(보고)되었음을 확인함			신고번호	
			신고금액	
			유효기간	
피신고(보고)기관 : 외국환은행의 장				

〈첨부서류〉 1. 사업계획서(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)

2.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
  3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 투자인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
  4. 해외투자수단이 해외주식인 경우,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※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(5자리) 및 업종명을 기재  
 ※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



# 유의사항

1. 본 신고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(송금)하되 투자(송금)후 즉시 동 사실을 관계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함
2. 본 신고(보고)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「외국환거래규정」제9-5조제3항에 의거 피신고(보고)기관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. 다만, 투자자의 상호·대표자·소재지(주소, 전화번호 등), 현지법인명,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신고(보고)기관에 통보하여야 함
3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9조에 의거 다음의 보고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
  - (1)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(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)  
: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
  - (2)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: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
·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대신할 수 있음
4. 결산 후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하거나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할 수 있음
5.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야 함
6. 본 신고 후 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로 규제될 경우 또는 조세체납의 경우 신고금액중 미송금액은 그 효력을 상실함

